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. 5. 24 선고 2021가단58115 판결 [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수은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2. 4. 19.

판 결 선 고 2022. 5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20. 6. 19. 피고와, 제품금액을 2억 원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정하여 음식물 슬러지 처리 건조기 제작·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,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, 원고와 피고는 2021. 4. 11. 위 계약을 합의해지 하면서 피고가 2021. 6. 30.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(이하 '이 사건 약정'이라 한다)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강문희